

의안
번호

1009

【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및 운영 조례안】

검토보고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3. 07. 19.(금)
- 나. 제안자 : 서경환의원 외 3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07. 25.(목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3. 07. 25.(목)

2. 제안이유

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물놀이장 운영함에 있어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배치(안 제4조)
- 나. 물놀이장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중으로 하고 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, 성수기 야간 개장 시에는 21시까지 연장 운영(안 제6조)
- 다. 물놀이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안전관리요원의 통제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등에는 이용을 제한(안 제8조)
- 라.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(안 제9조)

4. 관련법령 :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44조
- 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31조

5. 검토의견

-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
- 물놀이장의 질서유지, 안전사고 예방, 깨끗한 수질 관리 등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.